

第二分科討論要旨

鄭熙喆(사회자) : 考試制度야말로 法學教育和 法律實務를 連結하는 接點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問題는 이미 여러 機關에서 여러 사람에 의하여 討論의 對象이 된 바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열띤 意見交換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問題는 머칠을 두고 이야기해도 結論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難題임을 명심하고 討論에 參與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漢(건국대) : 法學教育和 考試制度에 관하여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法學教育 또 하나는 考試制度를 各其 생각해 보고 또 이를 連結시켜보고자 합니다. 現在 法學教育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遂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微視的인 觀點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現在 法學教育期間에 있어서 4년이 너무 짧으니 5~6年으로 延長되어야 한다느니 또는 事例中心의 法學教育을 해야 한다고 皮相的으로 觀察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 法學教育은 大學教育의 一部로서 理解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法學教育이 問題가 되기 始作한 것은 소위 實驗大學制度가 생긴 以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즉 法科大學의 特殊性을 認定하지 않고 他大學과 同一하게 待遇한데서 緣由한 것입니다. 法學教育을 4年間으로 限定하더라도 內容 및 實踐에 있어서 國家當局이 法學教育의 特殊性을 認定해 주었던들 지금과 같은 批判은 면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몸담고 있는 大學에서는 무려 40학점의 教養學點을 除外하고서 現在 140~150學點으로서는 도저히 特別法에 대한 講座나 case method에 의한 講義는 도저히 不可能한 實情입니다. 이와 같이 가르쳐야 할 科目은 많은데 許容되는 學點數는 制限되어 있어서 各大學에서는 여러가지 便法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法學教育을 內實化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떠한 方向에로의 法學教育의 改革도 單純한 體制의 盲目的인 踏習을 해선 안될 것입니다.

考試의 年齡制限에 관해서는,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老齡의 辯護士에게도 그 制限이 있어야 할 것인 바 高齡의 合格者라 해서 이를 不合格시키는 것은 不當한 處事라 하겠습니다.

考試의 管掌機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境遇에 있어서는 現在 總務處에서 관장하는 것이 技術的인 面에서나 經濟的인 面에서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科目問題는 應試資格과 關聯된 問題라고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法律家의 養成에 있어서 最少限의 教養教育

을習得하는 것이 必須的인 고로 적어도 大學學部課程 3年以上의 資格要件을 賦課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其他의 問題로서는 國家의 高級 公務員은 고도의 法律知識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現在의 行政高試에서 있어서 非法律科目의 過多는 行政의 專門化추세에도 不拘하고 檢討의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司法試驗의 合格定員도 現水準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金亨培(고려대) : 우선 4년제, 5년제, 6년제中 어느 것이 좋은가와 法學敎育과의 關聯問題에 관해서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는 5년 내지 6년제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現在로서는 여러가지 輿件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法學敎育의 充實化 및 法學敎育의 目的이 무엇이나 즉 교양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하는 것입니다. 法學敎育이 좀더 충실한 敎育이 되려면 敎養敎育의 비중을 줄이고 專門的인 法學강의로 志向해야 할 것입니다.

司法試驗의 應試制限에 관하여는 마땅 法科大學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 門戶를 閉鎖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는 疑問입니다.

實驗大學制度의 壓迫으로부터의 解放이 問題되는 것 같으나 文敎部側에 의하면 실현대학 제도는 이미 實驗으로서 끝났다고 答辯한 바 있으므로 法學敎育의 內實化를 위해서는 各大學의 自律에 의하여 일종의 便法을 使用해서 講義難을 解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李英秀(변호사) : 지금 論議되고 있는 問題는 全體와 連結되어 있으므로 단편적인 性質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法科大學을 나온 분들은 指導的인 位置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材木들을 잘 기르고 키운다면 이나라의 法律文化의 發展은 물론이거니와 民主主義를 土着化시키는데 主役을 담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現實은 그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法科大學의 敎育目標은 우리 社會가 民主主義를 소중한 가치체제로 여기며 또한 健全한 民主主義體制를 건설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生活觀·人生觀을 가진 法曹豫備候補生을 養成하는 데 注力해야 할 것입니다. 이땅에 결단코 人意의 支配가 아니라 法의 支配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確信합니다. 한 나라의 法曹水準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民主主義는 達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法曹水準은 法曹人의 量과 質에 따라 上乘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5%만이 狹義의 법조인이 되고 있는데 기타의 社會 諸分野에서 活動하는 準法曹人의 養成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安逸한 敎科書式의 注入式敎育은 廣義의 法曹人을 敎育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本人의 생각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民主主義, 法의 支配등을 實現시킬 수 있는 legal mind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法學敎育이 志向해야 할 것입니다. 試驗制度는 法學敎育과 關係되지만 法曹人의 數字와 關聯하여 생각할 때 現水準을 계속 維持해야 할 것입니다. 300名の 많

은 合格者에 대해서 一角에서는 質面에 關於하여 憂慮의 表示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法曹人口의 底邊擴大가 早速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考試制度와 關聯하여 시험제도상 가장 나빴던 것은 考試가 마치 科擧制度와 같이 出世의 登龍門으로 看做되어 왔다는 事實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觀念은 絶對로 根絶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法律文化의 向上에 障礙要因으로서 이것이 없어지도록 우리 법조인 모두가 努力해야 할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資格問題에 關하여는 法科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科大學教育을 3年以上 履修한 者에만 限定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申鉉武(법무부) : 本人이 過去 考試를 數차례 지러본 經驗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考試制度에 있어서는 數年間의 工夫에도 不拘하고 단 0.1點 차이로 不合格되는가 하면 요양수로 試驗에 應試했던 것이 재수가 좋아서 合格한 例가 非一非再했던 것으로 알며 이는 약간의 不條理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로 法曹人口의 人口底邊擴大가 時急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美國의 경우 行政各部에는 法조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專門的인 行政事務에 高度의 法律的인 知識을 가진 實務家들이 大學에서 배운 것을 잘 活用하면서 훌륭하게 活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legal mind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法曹界에 갈 필요는 없고 行政府, 금융계, 財界等 기타 社會의 諸分野에 進出하여 그들의 法律知識을 活用하는 것이 人力의 浪費를 막을 수 있고 全體社會의 效率的인 進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黃秉印(총무처 국장) : 行政高試 科目에서 法律科目이 너무 소외되었다는 指摘에 대하여는 오늘날 行政의 專門化에 부응한다거나 大學教育과의 連繫化, 正常化에 제 나름대로 努力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法律科目이 적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法科大學學生들을 위한 配慮였다고 생각합니다.

司法試驗에 대해서는 人員이 많지 않았으나에 대해서는 國會나 其他 團體에서도 批判의 소리를 들은 바도 있지만 앞으로는 300名以上을 뽑을 豫定인데 이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은 省略하기로 하겠습니다. 優秀한 法科大學의 卒業者中 6.6%만이 司法試驗에 合格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學生들에 대하여는 各界各層에 進出하여 活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學歷制限에 대해서는 本人個人的 意見으로서는 司法試驗의 경우에는 受驗生의 便宜를 위해서는 大學敎養科目의 不必要한 試驗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一定한 學歷制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年齡制限에 대하여는 司法試驗이 資格試驗의 性格을 갖는고로 老齡合格者에 대해서 이들을 除去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制限을 두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應試回數는 젊은 靑春을 考試工夫에 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그리하여 應試回數에 대해서는 制限을 두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試驗의 管掌機關에 대하여는 1948年以後 30年동안 總務處에서 관장해 왔읍니다만 試驗制度의 專門性, 科學的인 評價方法의 實施 등등의 問題 또 餘他の 試驗도 總務處에서 계속 관장해 왔기 때문에 總務處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